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22. 8. 25.(목)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8
발의일자 : 2022. 8. 12.
회부일자 : 2022. 8. 18.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박규탁 의원 외 12명

2. 제안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5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29조)

○ 국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32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붙임

○ 법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환경정책과) :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8월 19일 ~ 8월 24일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국제사회는 급격한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1](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2]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경북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본 조례안은 총칙(제1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제2장),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3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제4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제5장) 총 5장, 3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의 규정을 두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였음.

2) 상위법 제정으로 기존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함.

○ **제1장 총칙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기본원칙(제3조),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제4조,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6조)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안의 체계가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3].

[제1장 총칙]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제33조(시행규칙)

○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원칙, 이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 /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 **안 제7조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으로, 국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달성 가능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감축목표의 이행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 총칙규정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해석, 책무, 적용범위, 범위 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1).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분야별 합리성과 포용성, 책임성 등이 요구되므로 목표설정 시 분야별 의견 반영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8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추진상황과 성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한 것은 효율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장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제12조(위원의 임기) / 제13조(위원의 해촉)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제16조(회의) / 제17조(분과위원회)

○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

제18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 제25조(물관리 사업) / 제26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 **안 제18조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 분야별로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토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30조부터 제33조[4]의 규정을 지역적 여건에 맞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 **안 제24조는** 법 제36조의제3항[5]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6]하고 통계의 투명성과 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및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5조는** 도지사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 **안 제26조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

4) 법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3조(탄소 흡수원 등의 확충)

5)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온실가스 관련 통계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온실가스 통계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탄소 분야 관련 산업·지역의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 고용환경변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과 분야의 부담을 분담하여 충격완화 및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제33조(시행규칙)

○ **안 제27조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합을 통해 도민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28조에서는**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 목　　적 :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공동 노력으로 상향식 기후행동 확산
○ 발　　족 : 2020. 7. 7.(화)
○ 참여현황 : 경북도 및 18개 시·군(22. 6월 기준, 전국 221개 지자체 참여)
○ 역　　할 : 지자체간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추진 및 정보공유
○ 추진사항 : 탄소중립 선언('20.7.7), P4G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 참여
('21.5.24, 243개 전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 계획 수립

○ **안 제29조와 안 제30조는** 도지사가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1조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 제68조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7].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추진 현황

○ 목　　적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지원
○ 사업방식 : 민간위탁(공모에 의해 지정)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 100, 도 100)

○ **안 제32조에서는**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 제69조제4항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22년 본예산에 2억원(국비 50%, 도비 50%)를 편성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함.

□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2021. 9월),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2. 3월)·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한 도의 역할과 정책의 수립·시행은 물론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온실가스 관련 통계

붙임 온실가스 관련 통계

□ 온실가스 배출 통계(2019년)

(단위 : 만톤 CO_2eq)

구 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	총배출량 (LULUCF제외)	순배출량 (LULUCF포함)
국 가	61,150	5,199	2,096	1,691	-3,955	**70,137**	66,182
경 북	4,971	348	321	165	-849	**5,805**	4,956
국가대비 경북비중(%)	8.1	6.7	15.3	9.8	21.5	**8.3**	7.5

※ 대표 온실가스 종류 :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_6)

※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만톤 CO_2eq)

지 역 (배출순위)	국가	충남(1)	전남(2)	경기(3)	경남(4)	경북(5)
총배출량	**70,137**	15,475	9,100	8,511	5,918	**5,805**
지 역 (배출순위)	**인천(6)**	**강원(7)**	**울산(8)**	**서울(9)**	**충북(10)**	**부산(11)**
총배출량	5,356	5,003	3,847	2,798	2,772	1,458
지 역 (배출순위)	**전북(12)**	**대구(13)**	**대전(14)**	**광주(15)**	**제주(16)**	**세종(17)**
총배출량	1,389	863	588	578	460	216